

경운대학교 원격수업 운영에 관한 규정

제1조 (목적) 이 규정은 학칙 제20조 제1항 학습형태에 의거 원격수업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 (원격수업 교과목 분류) “원격수업”이란 고등교육법 제22조에 따라 방송·정보통신 매체 등을 활용한 수업을 말하며, 교과목 분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<개정 2022.04.18.>

1. 원격수업 교과 :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하여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강좌로 중간-기말고사 등 평가활동을 제외한 교수-학습 활동의 90% 이상이 원격수업으로 진행되는 교과목
2. 원격·대면 혼합수업 교과 : 대면 수업과 원격수업 형태를 혼합하여 개설되는 강좌를 말하며, 중간-기말고사 등 평가활동을 제외한 교수-학습 활동의 90% 미만이 원격수업으로 진행되는 교과목(블렌디드 및 플립드 러닝)

제3조 (원격수업관리위원회) ① 원격수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“경운대학교 원격수업 관리위원회”(이하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② 위원회 구성은 교학처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교직원, 학생, 관련 전문가 등으로 10명 이내로 구성하며, 학생위원은 전체 위원 정수의 10분의 3 이상이 되도록 한다.

<개정 2021.10.01.>

③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(또는 위촉)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.

④ 위원회는 원격수업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며 아래와 같은 기능을 수행한다.

<개정 2022.04.18.>

1. 원격수업 관련 규정 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
 2. 원격교육 계획 및 기획에 대한 심의
 3. 원격수업 운영에 관한 심의
 4. 원격수업 교과 품질관리(콘텐츠 유지 또는 수정 및 폐지 등에 대한 평가)에 대한 심의
 5. 기타 원격수업 질 관리 및 기타 원격수업 운영에 필요한 사항
- ⑤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4조 (원격수업 교과목 개설 기준) ① “원격수업 교과”를 개설할 경우에는 사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

② 정규학기에 개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, 계절학기에도 개설할 수 있다.

③ 전임교원 및 초빙교원이 담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
④ 삭제 <2022.04.18.>

⑤ 삭제 <2022.04.18.>

- ⑥ “원격·대면 혼합수업 교과”는 개설에 따른 별도의 제한을 두지 않는다.
- ⑦ 원격수업 교과목은 원격수업 교과목 여부를 표시하여 개설하고, 개설교과목 정보에 표기하여 학생이 인지할 수 있도록 한다. <신설 2022.04.18.>
- ⑧ 천재지변 또는 그 밖에 교육과정의 운영상 부득이한 사유 발생으로 대학 차원에서 원격수업 시행을 결정 할 경우 제1항의 심의를 면할 수 있다. <신설 2022.04.18.>

제5조 (원격수업의 운영) ① 원격수업 운영은 교학처와 원격교육지원센터에서 지원하며 아래의 업무를 수행한다. <개정 2021.10.01.>

1. 온라인교육시스템(학습관리시스템) 운영(원격교육지원센터)
 2. 원격수업 강좌 개발 및 운영(원격교육지원센터)
 3. 수강신청 및 학점부여 등 학사관리(교학처)
- ② “원격수업 및 원격·대면 혼합수업 교과”의 강의 콘텐츠 재생시간은 차시당 25분 이상으로 제작되어야 한다. 단, 실험실습 교과는 주당 수업시수의 1/4 이상이 되도록 제작하여야 한다.
 - ③ “원격수업 및 원격·대면 혼합수업 교과”의 총 학습시간은 콘텐츠 재생시간 및 학습활동(과제, 토론, 퀴즈, 질의응답 등) 시간을 종합하여 차시당 50분 이상이 되도록 구성한다.
 - ④ 개설된 “원격수업 교과”의 폐강 기준은 일반교과와 동일하며, 교양교과는 100명 단위, 전공은 40명 단위로 분반 운영하되 분반 초과 인원의 30% 이내는 합반 운영할 수 있다. 단 학점교류 원격수업 관련은 협약에 따른다.
 - ⑤ “원격수업 교과”에 대한 학생 강의 평가는 일반교과와 동일하게 학기당 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.

제6조 (원격수업의 이수기준) ① “원격수업 교과”의 학점당 이수시간은 15시간 이상으로 한다.

② 삭제 <2022.04.18.>

제7조 (원격수업의 평가관리) ① 시험, 과제, 출석 등을 종합하여 평가하되 중간시험과 기말시험의 성적 평가는 출석 평가를 원칙으로 하며,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온라인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.

1. 고등교육법 제23조제1항제4호에 따라 군복무 중 원격수업 교과목을 수강하는 경우
 2. 천재지변 또는 교육과정 운영상 부득이한 사유로 교학처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
- ② 기타 성적 평가기준 및 방법은 대면수업과 동일하게 적용한다. <개정 2022.04.18.>

제8조 (원격수업의 출석관리) ① 출석은 학습시간을 기준으로 LMS(학습관리시스템)에 표시된 출석인정 시간을 적용하여 처리하며 주차별 90%이상 수강 시 출석으로 인정된다.

- ② 결석일수가 총 수업일수의 1/3을 초과할 경우에는 F학점을 부과한다.
- ③ 출석에 따른 근거자료는 10년간 보존하여야 한다.

제9조 (원격수업의 외부콘텐츠 사용) ① 원격수업의 강의 콘텐츠는 강좌 담당교원이 제작하고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 단, 인사이동 및 대학 차원의 특수 목적을 위한 외부콘텐츠(구매 또는 공유 콘텐츠) 등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.

② 공개 콘텐츠와 같이 저작권 등의 제반 문제가 없는 경우, 주차별 강의 내용의 30% 이내에서 타인이 제작한 콘텐츠를 사용할 수 있다.

제10조 (수업시수 및 강사료 지급 기준) ① 대학 연합체 및 학점교류로 개설하는 “원격수업 교과”의 책임시수는 인정하지 않는다.

② 계절학기 수업의 경우 “원격수업 교과”의 강사료는 일반수업의 1/2을 지급한다.

제12조 (정보보호) ① 원격수업운영시스템 상에서 취득한 개인정보는 교수·학습 활동 목적 이외에 「개인정보보호법」을 위반하여 사용할 수 없다.

② 원격수업 콘텐츠 제작 시 「저작권법」에 위배 되는 일이 없도록 저작물(동영상, 소스, 사진, 그림, 음원 등)자료의 무단 복사나 활용은 허용하지 않으며 문제 발생 시 모든 법적 책임은 저작 교원에게 있다.

③ 원격수업운영시스템에 탑재한 모든 콘텐츠의 무단 배포를 금지 한다.

제15조 (준용) 이 규정에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침으로 정하여 운영하고 기타사항은 학칙 및 제 규정을 준용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2. (경과조치)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‘경운대학교 원격교육운영에관한규정’은 ‘경운대학교 원격수업 운영에 관한 규정’으로 대체한다.

부 칙 <2021.10.01.>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21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<2022.04.18.>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.
2. (경과조치) 이 규정 적용 이전에 시행한 행정업무는 이 규정에 의한 것으로 본다.